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57606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
담당변호사 우승원, 차종선, 진현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주 문

1. 군산시 C 대 301㎡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5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2019. 5. 29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되는 사실관계

가. D은 2019. 3. 6. 원고로부터 3,0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은 연 15%, 기간만료일은 2024. 3. 6.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, 2019. 7. 23.경부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9. 9. 20.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, 2020. 9. 27.을 기준으로 한 대출 원리금은 합계 32,430,572원(원금 28,494,751원 + 미수이자 3,935,821원)에 이른다.

나. 동생인 피고에 대하여 3,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은 2019. 5. 22.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그 소유의 군산시 C 대 30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를 매매대금 1,500만 원에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,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원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 이외에도,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약 1,400만 원 상당의,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,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, 7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을 제1, 2, 4, 6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다.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 갑 제1, 5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9. 9. 24. 작성한 재산조사기록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기로 'D 피고, 가처분(사해행위취소)'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원고는 2019. 10. 1. 전주지방법원 2019카단12043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4일 그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, 이 사건 소가 2020. 9. 29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2019. 9. 24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, 사해행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조사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D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,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).

나.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강호